##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01

발의연월일: 2021. 11. 9.

발 의 자:백혜련·소병훈·송재호

김정호 • 윤건영 • 최종윤

서영교 · 오영환 · 조오섭

임호선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관행화된 부정청탁 및 뇌물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있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음.

### 주요내용

가.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도급계약 체결 또

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하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21조의5 신설).

나. 도급계약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호 신설).

#### 법률 제 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각각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의3(위반사실의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5를 위반한 사실을 발 견하면 시·도지사가 제10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 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제21조의5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

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등록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제36조제1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를"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생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	②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
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	
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	
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	
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	
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	
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	
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	③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다.

- 1. (생략)
- 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 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생략) ④ (생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2.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 한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 사는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 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 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

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 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 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 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 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 설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 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신 설>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 \_ 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의3(위반사실의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제21조의5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도지사가 제10조의2에 따른 영업정기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5(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등의시공 및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방시설공사등의 업체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32조(청문) <u>제9조제1항</u>에 따른 조소방시설업 <u>등록취소처분이나</u> <u>영업정지처분</u> 또는 제28조제4 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 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	--------

제	32조(청문) <u>제</u> 9조제1항 또는	제
	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u> 규정</u> <u>등</u>	록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이나	과
	<u>징금부과처분</u>	

----.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

   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한 자

-----.

- 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 <u>를</u>-----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 2. ~ 7. (생 략)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1.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
  - 2. ~ 7. (현행과 같음)